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1.

발 의 자 : 김남희 · 이수진 · 임호선
양부남 · 임미애 · 이소영
이성윤 · 박민규 · 박홍배
박희승 · 서미화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,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,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,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
이는 예비양부모,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,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·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
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,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(안 제24조의2 신설).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)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·발급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때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의 결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에 관한 서류의 교부·발급 또는 그 기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교부·발급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증명서
2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그 등본 또는 초본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4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5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시양육기간 중 개인정보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서류의 교부·발급 또는 그 기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2(임시양육기간 중 개인 정보 열람 등 제한)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·발급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때부터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의 결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에 관한 서류의 교부·발급 또는 그 기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서류를 교부·발급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</u> <u>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증명서</u>

	<u>2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 등록표와 그 등본 또는 초본</u> <u>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</u> <u>4.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</u> <u>5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제2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 명</u> <u>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류</u>
--	---